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6
----------	-----

2021. 3. 23.(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동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3월 12일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동현 의원)

가. 제안사유

-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안 제4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안 제5조)
- 민간위탁(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나 이견이 없었으며, 도지사 의견(문화예술 산업과) 중 일부 수정요구에 대해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나
 - 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에서 제2항 중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은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서 ‘기본계획’보다는 문화예술의 유동적 흐름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원계획으로 수정,
 - 안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사무 해당여부, 민간위탁 선정절차 검토결과 선정 과정의 복잡성, 지원의 비효율성 등으로 ‘공연활성화’의 추진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확정하였음.
-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조례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에서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며, 거리공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계획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안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규정이므로 오히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극복 후 도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화시설에서 하는 공연 외에도 거리공연 활성화가 필요하며 충청북도는 도민을 찾아가는 공연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65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일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임동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56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임동현 의원

찬 성 자 : 박상돈, 송미애, 연종석,
이상식, 이상욱, 임영은 의원

1. 제안 이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안 제4조)
- 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안 제5조)
- 마. 협력체계(안 제6조)
- 바. 민간위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14호(2021. 2. 15. ~ 2021. 2. 20.)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추진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
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 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생략)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생략)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략)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